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3항(1차시험 면제대상자)을 중심으로 -

백석기, 이성진

경비지도사 시험은 1997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회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외부 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의 증가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열기로 인하여 민간경비종사자에 대한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3항의 1차 면제대상자의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이나 군대 등의 경력자가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11년 4월 개정된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비지도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 각 분야별 경력자 중심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1차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같이 일정 전공자로 한정하거나 민간경비종사자 중심으로 그 경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반 경비지도사를 시설경비지도사, 호송경비지도사, 신변보호지도사, 특수경비지도사로 각각 구분하여 공인된 국가자격증으로 세분화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등급별로 차별화된 자격급수를 부여하고 일정 근무경력을 조건으로 전문화, 세분화함으로써 민간경비분야의 전문 자격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은행, 관공서 등 특수한 시설 경비에는 실무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청원경찰관들도 민간경비 분야 중 시설경비분야에서는 경력을 인정하여 주고,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1차 시험의 면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자격검증제도, 민간경비산업

1. 서론

민간경비의 발전과 함께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1997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올해로 13회를 맞이하였고, 응시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경쟁률 또한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률의 배경에는 민간경비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취득이나, 경찰 등 가산점에 활용하기 위하여 젊은 구직자 또는 대학생의 증가도 그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또한 특정 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의 증가도 주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하는 경비지도사의 경쟁률에 비추어 우리나라 경호·경비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자

격증은 민간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민간경비업 종사자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차시험 면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경찰이나 군인 등 7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쉽게 1차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비업법 11조 3항의 법 규정으로 인해, 이러한 1차 시험 면제가 없이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여 합격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경비업 종사 경력이 7년 이상인자라 하더라도, 영세한 업체일수록 교육비 지원이 쉽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시간적 기회와 배려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올해 2011년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가 개정되어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추가되어 비민간경비업체 종사자에 대한 1차 시험의 면제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997년 최초 경비지도사 시험이 도입된 이후, 경찰관들의 퇴직 후 노후보장이 가능한 자격증으로 인기를 끌면서 경찰관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전체응시자가 13,004명 중의 53.6%인 6,968명이나 되어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그리고 제 1, 2회 경비지도사 시험에는 선발인원의 제한이 없어 총 합격한 자가 10,273명이나 되었다. 이후 3회 경비지도사 시험부터는 600명 수준으로 선발인원이 축소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1~2회 시험에서 상당히 많은 경찰관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경찰청의 무분별한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남발로 인하여, 경비업종사자보다 외부 경력자에 치중하게 된 결과가 되어 민간경비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야할 것이 전국의 100개가 넘는 경찰행정과의 수많은 졸업생들이 민간경비업체로 지원하여 관련 업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학과에서는 민간경비 관련 강의가 정식적으로 개설되어 이론 또는 이론과 실습의 병행(특히 전문대가 더 활성화되어 있음) 등을 통해 전문적인 민간경비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경비업체에 종사하게 될 때 관련 학과의 과목의 이수와 일정 근무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는 극히 드물다. 실제 경비업에서 7년 이상 종사자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영세한 민간경비업체가 많고, 대기업의 형태의 경비회사라 하더라도 교육비 지출, 근무시간의 외부교육에 따른 시간적 문제, 200인까지 경비지도사 1명, 그 이상 초과시 100명마다 1명의 선임 등을 이유로 기존 경비지도사의 외부교육 보다, 자체 소지자 선호 등의 문제로 회사의 지원이 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진정 민간경비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경비업무 종사자에게는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증가하는 1차 시험 면제대상자의 확대로 인하여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고득점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취득하기 희박한 자격증이 되어갈 수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실무경험이나 일정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가 되며, 따라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민간경비는 공적 영역의 경찰이 담당해야 할 부분에서 공경비의 보조적 역할을 여전히 강하게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다른 분야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후술할

미국의 CCP자격제도, 영국의 민간경비 공인 기관인 SIA(Security Industry Authority) 처럼 통한 전문자격증별 승인, 발급 등 민간경비 업무별 종사자들에 맞는 전문 자격화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의 현실적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 제도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중심에는 1차시험 면제와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II. 민간경비 자격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자격제도의 개념과 종류

1) 자격의 개념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27일 법률 5314호로 자격기본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법률은 국가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자격의 개념과 자격검증을 동법 제2조 1항, 9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을 정의하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유럽 직업훈련연구센터에서는 증서(Certificate)나 학위(Diploma), 또는 다른 증거 등에 의하여 표현된 하나의 표준(Standard) 또는 표준들의 집합(A Set of Standard)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박준석·홍준혁, 2006: 124).

2) 자격증의 종류

자격증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 자격과 민간자격제도, 민간공인 자격제도로 구분된다. 국가 자격증은 법령(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자격은 통상적으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령상의 국가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 기술자격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 인력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검정시험 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 개별법령상의 국가자격은 각 직종별 개별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며 관련정부부처 등에서 직접 및 산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면허성 자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민간자격이라 함은 국가외의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허정봉, 2011: 228). 그리고 민간공인 자격제도는 민간에 대한 일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장명진·이광남, 2003: 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비지도사 시험은 국가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다.

3) 자격의 검증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자격검증이라고 한다. 자격검증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으로 나누어지고 치러지고 있는데, 각각 필요와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필기시험은 자격 신청자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화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격신청자가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검증방법을 선택하여 검증에 임하는 것이 자격취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격신청자의 과거의 경험과 학습, 현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격종목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검증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선진국의 자격에 대한 검증을 살펴보면 응시자격으로 현장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의 활용에 있어서, 자격을 취득한 일정한 현장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업무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온 능력을 얻고 이를 검증받는 과정으로 자격증이 기능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박준석·홍준혁, 2006: 128-129).

2. 선행연구의 고찰

민간경비 자격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윤근(2001)은 1, 2회 경비지도사 시험에 걸쳐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었음에도, 자격증 소지로만 만족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등 경비지도사제도의 현실화 문제를 지적한바 있고, 박동균(2002)은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민간경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로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최정택(2009)은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충분한 운영자, 임원(간부) 및 중간관리자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검증된 임원과 중간관리자를 선발하는 자격검증제도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존 자격증을 일정기간(3-5년) 마다 갱신을 위한 시험이나 교육이수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임명순(2008)은 민간경비분야의 자격제도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경비원의 자격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자격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박준석·문임표·오세광(2008)은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과 같이 민간경비분야의 다양한 자격증 제도를 소개하면서 자격제도의 세분화와 다양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태민·강영길(2009)은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현행 4과목에서 필요 과목을 추가, 보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존 민간경비 자격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자격제도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민간경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지도사 자격제도 중 특히,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3항의 1차 시험면제자와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II.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제도

1.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도입

늘어나는 경비수요에 대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과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로 경비지도사는 1995년 12월 13일 법률 제5,124호로 개정·공포된 경비업법을 통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1997년 2월 23일 최초로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실시되었고, 올해로 13회를 맞이하게 된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경비 분야의 국가 자격증 제도로서 경비대상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박동균, 2004: 181). 소관부처는 경찰청의 생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1~2회 시험은 경찰청에서 직접 주관·시행하였으나, 3회 시험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최정택, 2009: 175). 그리고 경비업법 제11조에서는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제1~3항에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¹⁾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관련된 경비지도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경비지도사의 직무

1)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우리나라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경비업법 제12조 1항), 그 직무로는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경비업법 제12조 2항). 그리고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며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 호송, 신변보호, 특수경비업무 종사 경비원을,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특히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는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및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안황권, 2007: 26).

3.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분석

1) 시험방법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각각 구분되어 응시하도록 되어있다.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발인원은 2001년 시험부터 현재까지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으로 총 600명 수준에서 선발인원을 유지하였다. 실제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매년 경찰청에서 필요한 경비지도사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시험시간은 1차, 2차 각 80분으로 시행되고 있다. 응시자격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제한이 없다.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의 경우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고, 1차에 합격한 사람 중 제2차 시험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1>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시험	제2차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일)
일반경비지도사	① 법학개론 ② 민간경비론	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②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기계경비지도사			② 기계경비개론 ②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자료: 산업인력관리공단(2010년 시험공고).

2) 연도별 응시현황

경비지도사 시험이 최초 시행된 1997년 제1회, 1999년 제2회 시험에서는 경찰청이 직접 주관 및 시행하였고 1회와 2회의 시험에서는 선발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하였다. 1회 시험에서는 2,398명, 2회 시험에서는 7,875명의 경비지도사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하지만 3회 시험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최정택, 2009: 175). 이는 1997년 제1회 시행된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경찰관들의 퇴직 후 노후보장이 가능한 자격증으로 인기를 끌면서 경찰관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전체응시자가 13,004명 중의 53.6%인 6,968명이나 되어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다.²⁾

2001년 3회 경비지도사 시험부터는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선발인원을 600명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합격 커트라인 점수 또한 일반경비지도사 83.7점, 기계경비지도사 평균 77.6점으로 고득점을 해야 합격할 수 있을 만큼 그 난이도 또한 어려워지고 있고 시험수준 또한 증가하는 지원자에 대한 변별력을 위해 과거 기출문제에서 문제은행식 출제에서 최근에는 길어진 지문과 일반 수험서 등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 등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날로 까다롭게 출제되어지고 있다.

<표 2> 연도별 경비지도사 응시 및 합격현황

구분	시험일	선발예정인원		응시(2차기준)		경쟁률		컷트라인		합격인원	
		일반	기계	일반	기계	일반	기계	일반	기계	일반	기계
12회	'10.11.14	540명	60명	8,713명	498명	16.1	8.3	86.25점	76.25점	579명	63명
11회	'09.11.08	540명	60명	8,191명	452명	15.2	7.5	90.0점	83.75점	594명	72명
10회	'08.11.09	540명	60명	9,300명	500명	17.2	8.3	87.5점	80.0점	604명	68명
9회	'07.11.18	540명	60명	8,320명	546명	15.4	9.1	87.5점	83.5점	698명	62명
8회	'06.11.19	540명	60명	7,400명	450명	13.7	7.5	82.5점	80.5점	658명	61명
7회	'05.11.13	540명	60명	6,491명	400명	12	6.7	86.25점	81.25점	609명	61명
6회	'04.11.21	540명	60명	4,795명	346명	8.9	5.8	78.75점	76.25점	586명	61명
5회	'03.11.09	540명	60명	5,435명	503명	10	8.4	82점	72점	638명	86명
4회	'02.11.10	540명	60명	5,051명	616명	9.4	10.3	80점	78점	734명	62명
3회	'01.12.09	540명	60명	9,385명	1,077명	17.4	17.95	86점	80점	553명	81명
2회	'99.10.31	6,750명	750명	17,061명	1,413명	2.5	1.2	76점	60점	7,205명	670명
1회	'97.02.23	2,400명		12,317명	687명	5.7	2.3	82점	80점	2,161명	237명

※ 자료: 산업인력공단보도 자료 및 인터넷 검색자료 수정인용³⁾.

2) 관련 언론 기사로는 연합뉴스, 경비지도사 시험에 경찰관 대거 응시, (1997년 10월 1일자) 등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166222>)

3) 2009년 경비지도사 시험 세부분석

2009년도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자별 성별, 연령, 응시유형별 합격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과거 년도 시험에 대한 자료의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 경비지도사협회를 통해 2009년 경비지도사 시험 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⁴⁾ 이에 따라 2009년도 경비지도사 시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응시생 6천76명, 여성 응시생이 959명으로 나타났다. 민간경비 업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험 요소가 많으며, 육체적으로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남성 중심적 업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여성이 응시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합격률로는 평균 7.7%의 합격률에 비해 여성 합격률이 4.2%로 남성의 합격률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2009년 11회 경비지도사 시험 성별 분석

성별	1차 합격자				최종합격자			
	대상	응시	합격	합격율	대상	응시	합격	합격율
총계	7,035	5,557	3,566	64.2%	10,964	8,643	666	7.7%
여성	959	747	490	65.6%	1,194	899	38	4.2%
남성	6,076	4,810	3,076	64.0%	9,770	7,744	628	8.1%

※ 자료: 한국 경비지도사협회(2010년).

또한 2009년 11회 시험을 기준으로 볼 때, 응시대상자로는 20대~30대가 4,700명이 조금 넘게 응시하여 전체 응시자의 67%를 차지하였다. 반면 연령별 최종 합격자는 40대가 가장 많고 다음 50대, 30대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1차 시험면제 대상자 중 특정 직업 및 근무경력으로 1차를 면제받은 사람들이 1-2차를 동시에 준비하여 시험 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점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된다.

<표 4> 2009년 11회 경비지도사 시험 연령별 합격자 분석

연령별	1차 합격자				최종합격자			
	대상	응시	합격	합격율	대상	응시	합격	합격율
총계	7,035	5,557	3,566	64.2%	10,964	8,643	666	7.7%
10대	228	191	74	38.7%	232	161	0	0.0%
20대	2,924	2,317	1,389	59.9%	3,483	2,669	135	5.1%
30대	1,956	1,415	923	65.2%	3,059	2,213	165	7.5%

3) 자세한 내용은 산업인력공단 보도자료(http://epic.kdi.re.kr/epic_attach/2006/R0608074.hwp) 및 인터넷 검색자료(http://www.eduever.com/v2/geongbi/examinfo/exam_years.htm) 참고.

4) 한국경비지도사협회 법령정보내 2009년 제1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자료 참고(<http://www.ksia.in/board/board.php?id=etc>)

<표 4> 2009년 11회 경비지도사 시험 연령별 합격자 분석(계속)

연령별	1차 합격자				최종합격자			
	대상	응시	합격	합격율	대상	응시	합격	합격율
40대	986	804	636	79.1%	2,006	1,641	178	10.8%
50대	739	645	447	69.3%	1,799	1,603	168	10.5%
60대	194	178	96	53.9%	365	337	20	5.9%
70대	8	7	1	14.3%	20	19	0	0.0%

※ 자료: 한국 경비지도사 협회(2010년).

그리고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일반응시자의 합격률보다 경력이나 이전 합격에 의하여 1차 시험을 면제 받고 2차에만 응시한 수험생의 합격률이 전체 합격자의 2/3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2009년 11회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 응시자유형

응시자 유형	합격자수
일반 응시자	207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254
이전 합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205

※ 자료: 한국 경비지도사 협회(2010년).

III. 외국의 민간경비 자격시험

1. 일본

1) 법률의 규정

일본 경비업법 제22조에서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와 유사한 경비원의 경비지도교육책임자 및 기계경비책임자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그 직무성격상 일반경비지도사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기계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업무관리자가 서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이상철·안성조, 2008: 246). 일본은 1982년 일본 경비업법 개정으로 인해 경비업자가 해당 영업소마다, 해당 영업소에 있어서 다루는 경비업무의 구분마다,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경비원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경비지도교육책임자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김태민, 2009: 162). 특히 이러한 전문자격증제도를 통하여 민간경비의 전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적용 분야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경비 인력이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윤근, 2001: 178). 일본의 위 자격증의 특징은 강의수료와 경력의 인정으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강습수료의 과정에 있어서公安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업무에 대해 행하는 경비지도교육책임자 강습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경력의 인정은 ①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업무에 있어서 관리자 또는 감독적 지위에 있었던 기간이 통산 7년으로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에 대해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 항에 준하는 지식 및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도교육책임자 강습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공안위원회가 경비원의 지도 및 교육 업무에 관하여 지도교육책임자 강습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자격 증서를 교부한다(양춘호·노선표·임대용·조동진, 2002: 313-314).

2. 미국

1) 법률의 규정

1990년대 들면서, 연방차원에서 시큐리티 전문자격증제도의 발전 및 이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특히 1991년 엘 코어(Al gore) 상원의원은 시큐리티 전문자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정착을 목표로 일부 법안을 제출하였다. 두 번째 발의는 1992년 캘리포니아 주 매튜 마르티네스(Mattew Martinez)의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최초 엘 코어(Al gore)의원의 법안보다 더 명확하여, 최소한 8시간의 기초교실 교육과 필기시험의 합격, 그리고 최소한 4시간의 현장실습 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강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교육과 현장에서의 훈련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93년 테네시주의 돈 선드퀴스트(Don Sundquist)의원이 경비업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 및 약물검사의 통과를 조건으로 할 것 등의 내용의 자격발부 절차가 요구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최소 사전훈련 시간을 16시간이상, 그리고 현장실습처럼 발생하는 비슷한 정도의 사전임무를 최소 8시간이상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미국은 주(州) 정부중심으로 각종 자격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조용철, 2007: 137-140).

2) 미국의 민간경비자격의 특징

미국은 우리나라 경비지도사 제도와 유사한 CC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제도가 있다. 이 자격증은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즉, 미국 산업시큐리티협회(ASIA: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으로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경호업체들이 ASIA에 가입되어 있어 공신력이나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1997년 ASIA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PP자격증 소지자의 60%가 20년 이상 경호경비업체 또는 이와 상응한 근무경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CCP지원자는 225

문제로 구성된 시험문제를 통과해야 하며, 시험과목으로는 시큐리티 영칙과 실무, 사업구조와 실무, 개인 시큐리티, 물리적 시큐리티, 정보보호, 응급상황실무, 조사, 관련 법규이다. 이처럼 미국은 단순자격증에 그치지 않고 경호경비분야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써 활동하는 자에게 자격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김태민·강영길, 2009: 166-167). 또한 3년마다 시험의 합격 후 갱신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격시험은 무척 까다로운 편이며 일정학력과 근무경력의 기준⁵⁾을 충족해야 한다(양춘호·노선표·임대용·조동진, 2002: 312).

3. 영국

영국은 민간경비산업법(PSIA -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가 2001년 제정된 이후 정부, 공인인정 자격증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를 관장하는 부서가 SIA(Security Industry Authority)이다. SIA는 영국의 전체 민간경비 산업분야에 대한 책임기관이면서 독립된 형태를 띄고 있다.⁶⁾ SIA는 민간경비산업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범죄를 줄이며, 경비 표준을 지정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민간경비분야의 개인 자격증 승인, 경비업체의 승인 여부, 민간경비 산업운영 검토, 업계의 교육 및 감독기준 승인 등이 있다. 또한 국무장관은 민간경비 관련 부분 지시전 SIA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SIA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분야의 자격증으로는 현금 및 귀중품 운송, 신변보호, 방범 CCTV, 키홀딩과 Immobilising⁷⁾ 등이 있다. 각 분야별로 관련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여야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종사자에게는 자격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SIA는 자격증 신청자에 대한 신원의 조사를 통해 적합한자에 대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증에 3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처럼 영국은 민간경비분야의 자격제도에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경비 분야의 관련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기관인 SIA를 통해 자격증 발급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자격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자격의 발급뿐만 아니라 민간경비분야 전반에 SIA가 중심이 되어 많은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학위가 없는 경우 - 9년간 안전분야 경력을 필요하며, 이중 2년은 안전업무책임자로서 종사해야함, ② 전문학사 - 7년간 안전분야 경력을 필요하며, 이중 2년은 안전업무책임자로서 종사해야함, ③ 학사학위(Bachelor's Degree) - 5년간 안전분야 경력을 필요하며, 이중 2년은 안전업무책임자로서 종사해야함, ④ 석사학위(Master's Degree) - 3년간 안전분야 경력을 필요하며, 이중 2년은 안전업무책임자로서 종사해야함, ⑤ 박사학위(Doctoral Degree) - 2년간의 안전분야 경력을 필요하며, 2년간 안전업무책임자로서 종사해야함.

6) 영국 SIA소개 참조(<http://www.sia.homeoffice.gov.uk/Pages/about-us.aspx>)

7) 단어 의미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차량 등 운행을 못하도록 고정장치를 하거나 견인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함.

IV.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문제점

1. 非 민간경비업 종사자에 대한 1차 시험 면제의 확대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의 면제 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올해인 2011년 4월 4일자로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라 1차 시험 면제대상자의 범위는 기존 1항~7항까지로 구성되었으나, 개정에 따라 교정직렬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8항에 추가됨에 따라 총 1항~8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경비업법 시행령에 의한 1차 시험 면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⁸⁾을 이수한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1차 시험 면제대상자를 각 호별로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정보공개청구⁹⁾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 세부 자료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의 1호~3호로 제1차 시험이 면제된 자의 수를 살펴보면 제13조 1호의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된 자가 최근 3년간 총 1,577명, 제2호인 대통령 등의 경호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하여 1차 시험을 면제된 자가 13명, 3호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된 자가 총 2,772명

8) 여기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9) 접수번호 1293903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으로 최근에는 경찰관의 경력자 응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초기와 비교하면 군대 경력 인정으로 인하여 1차 시험을 면제받고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의 1호~3호로 제1차 시험 면제자

연도	경비업법 시행령 13조 각호별 면제자수		
	1호	2호	3호
2008	598	2	961
2009	503	4	915
2010	462	5	893
합계	1,563	11	2,769

※ 자료: 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자료(2011년).

반면, 제 4호에 의거하여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 경력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최근 3년간 총 744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9년 말 기준으로 경찰청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총 허가 경비업체 수는 3,270개이며 근무하는 경비원의 수가 12월 31일자로 14만6천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경비지도사로 매년 1차 시험을 면제받은 대상자는 744명으로 0.5%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학학력과 경비업 종사경력에 따라 대학졸업과 경비업무종사경력이 3년에 해당하는 제5호와 전문대학 졸업과 경비업무 종사경력이 5년 이상에 해당되는 제 6호로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이 면제된 자는 26명과 18명으로 극히 미약하게 드러났다.

<표 7>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의 4호~6호로 제1차 시험 면제자

연도	경비업법 시행령 13조 각호별 면제자수		
	4호	5호	6호
2008	302	2	3
2009	180	9	7
2010	262	10	2
합계	744	21	12

※ 자료: 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자료(2011년).

우리나라 각 전문대학과 대학교에서는 경찰관련 전공을 학과가 무척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래 <표 8>를 살펴보면 전국의 학교 수로만 129개, 입학생의 수로 8,749명에 달할 만큼 매우 많은 학교와 학생 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과 및 학생 수로 인해 졸업 후 민간경비업종에 종사하는 졸업생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1차 면제자 수는 3년간 총 대학, 전문대졸을 모두 합쳐 3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일정 학력 이상의 자격요건에 근거한 미국의 경우와는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현실은 차이가 매우 크다.

<표 8> 2010년 우리나라 경찰관련 전공학과 개설 학교 수 및 입학생 수¹⁰⁾

구분	2년제	4년제	합계
학교수	57	72	129
입학생수	5,899	2,850	8,749

※ 자료: 대학정보공시센터 (2010년) 자료 수정인용.

이러한 면제자수가 극히 저조한 이유는 현업의 근무를 통해 추측해 볼 때, 관련 자격증의 면제대상에 대한 관심의 저조로 자신이 1차 면제 대상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거나, 1차 시험의 면제과목이 특정 3과목 이상의 교육이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에 정확히 맞지 않는 과목이 있어 자격요건이 불합치 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수많은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과 100%일치하게 과목명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차 과목의 법학개론은 경찰관련 학과가 아닌 법대에서 1학년 과목으로 수강이 이루어지나, 사회과학대학의 분야에서는 법률과 공공질서, 법과 정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법학개론의 내용과 동일한 수업을 받고 있고, 민간경비론, 기계경비 등 과목도 경비업법의 규정된 수강과목과는 조금 유사한듯 하나 상이하게 보이는 과목명으로 규정된 것도 틀림없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과목으로 이해하는 등의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또한, 경찰학전공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있는 우수한 인프라의 인력에 대한 1차 시험 면제도 전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2. 1차 시험과목의 현실성 부족

우선 시험제도의 면제자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의 지적에 앞서, 1차 시험문제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현재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은 1차 필수 2과목과, 2차 선택2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과목별로 보면 법학개론의 경우 헌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등 경비지도사 직무에는 맞지 않는 너무 많은 잡다한 내용을 요구함으로써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공배완, 2006: 67). 전문자격증으로 전문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격증일 경우 관련 업무와 밀접하고 세부적인 시험과목의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차 시험과목을 보면 필수과목으로 경비업법 1과목 외는 선택으로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과 기계경비지도사 2차 응시자를 위한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수험생들은 일반경비지도사는 2차 선택과목에서는 경호학을 선택하고, 기

10) <표 8>의 통계수치는 대학정보공시센터 2010년 대학 통계 기본 자료를 기초 자료로 하여 전공과목을 추출할 때 '경찰'로 전공과목을 검색하여 나온 학과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집계한 것이며 동일명을 제외하면 유사 또는 복합전공 형태로 전문대학에는 경찰관련 학과가 43개, 4년제에는 44개가 검색되었다. 예로 경찰경호학과, 경찰무도전공, 경찰법무행정, 경찰학부, 경찰학전공 등 다양한 이름의 형태로 경찰전공학과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http://www.academyinfo.go.kr/subjectSearchAction.do>).

계경비지도사는 대부분 기계경비개론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매년 출제되는 시험에서 수험생이 합격하기 쉬운 과목으로 물리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수험서적들도 일반경비지도사 수험서에 1차 시험과 2차 경비업법 및 경호학을 하나의 수험세트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은 선택이 아닌 경호학이 필수과목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결국,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업의 종류가 시설경비, 인력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사의 업무가 단순 일반경비지도사의 경호학 시험과 경비업법으로 전문적인 일반경비의 4가지 각 경비업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인으로 충분히 검증되는지 의문이 든다.

3. 경비지도사 선임배치의 문제

우리나라 경비지도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경비업법 제1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불합격 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최종 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신원조회를 거치게 되며, 혹시 합격한 자 중에 이러한 경찰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시험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은 무효처리하게 된다.

<표 9>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 | |
|---|
| ① 만 18세 미만(1991. 10. 17 이후 출생자)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이러한 시험합격 후 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교육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실제 19세나 20세의 어린 나이의 경비지도사가 현장에 배치·선임될 경우 실무경험도 없이 자기보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경비원들을 지도감독하기란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 물론 나이가 절대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현장의 실무경험을 모르고서는 경비원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경비업계의 현실이 그러하듯,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현장의 경험이야말로 무척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4. 청원경찰관 등 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현재 경비업 종사자 중 청원경찰은 위 1차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타 경력자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1차 시험면제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하여 cyber 경

찰청에 접수된 민원제기 글이 있어, 이에 따른 경찰 측의 답변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질의내용 ○

- 청원경찰의 경력이 경비지도사 1차 면제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¹¹⁾

「저는 국가(정부기간)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으며 4년제 경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에 보면 4년대를 나와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수하고 경비경력 3년이 되는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4년대 경호학과를 나와서 3과목을 이수했는데 어떻게 일반 경비나 특수경비(3년)을 하는 자는 면제가 되고 국가(정부기간)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또한 청원경찰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으로도 이수했음에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경력이 왜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청원경찰이 비록 정식 경찰은 아니지만 나라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 경찰측 답변(2008년 7월 1일)

「경비지도사 시험은 경비업법에 따라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등 무능력자 또는 범죄경력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셨다면 귀하도 충분히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경찰공무원 7년이상 근무,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 경력과 교육 이수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근거하고 있어,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의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은 차이점은 있으나 민간경비와 유사한 부분이 다소 많은 근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경찰청 유권해석 상으로도 볼 수 있듯 이들은 경비지도사 취득에는 그 자격요건에서 1차 시험 면제자도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민간경비분야에서 시설경비분야에 종사하며 그 장소가, 관공서나 은행 등 특수건물 등이라 일반 경비원이 접하지 않은 특수한 시설경비업무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찰과 교정직렬 공무원까지 1차 시험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이는 청원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크게는 경비 업무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의 사기에도 큰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오랜 현장경험을 가진 이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원경찰과 유사하게 무기휴대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특수경비업무의 경력자는 3년간의 경력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원경찰관의 경력불인정은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군 경력의 인정과 비교해 볼 때 2010년 경비지도사 1차 면제 병과에서 육군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1차 면제는 각 병과마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중 군악, 의무, 군종에게까지 거의 대부분 병과를 1차에서 면제하는 것에서 비교해 볼 때 청원경찰의 자격배제는 차별적인 요소로 보일 수

11) 경찰청 게시판 민원처리(http://www.police.go.kr/participate/pt_board_view.jsp?idx=122337 : 민원접수일자 2008년 6월 16일) 참조.

있다.

<표 9> 2010년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병과(육군)

장교(병과)	준사관(특기)	부사관(특기)
보 병	보병	일반보병, 특전보병
기 갑	궤도차량정비	전차승무, 전차정비, 장갑차
(중간생략)		
부 관	부관, 군악	부관, 군악
현 병	수사	헌병, 수사
경 리	-	경리
정 훈	-	정훈
법 무	법무	법무
의 정	의무	의무
간 호	-	-
군 의	-	-
치 의	-	-
수 의	-	-
군 종	-	군종 ¹²⁾

※ 자료: 경찰청 (2010년).

이러한 특수한 경력의 공무원에게 1차 시험이 점차 확대된다면, 특별사법경찰관에게는 1차 시험이 면제되지 않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고, 이 또한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면 이에 따른 형성성도 제기 될 수 있다. 물론, 경찰공무원 또는 군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은 경비업무 중 특수경비 등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 경비지도사 시험이 각 경비업무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있고, 경비업에 경험이 전혀 없이 이론적 시험과 교육이수로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의 특성상 상당히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다.

V. 경비지도사 시험의 개선 방안

1. 민간경비업 경력자 중심의 1차 시험면제 확대

경비지도사 시험은 1차 시험 면제자가 주로 경찰과 군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정 경비업의 경

12)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제822호) 제3조에서 군종업무의 정의로 군종장교(군종참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행하는 종교활동·교육활동·선도활동 대민활동 및 기타활동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2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국 방부 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력과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1차 면제 대상자가 현저히 비교될 만큼 적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경비업체 내부적으로 관련 면제대상자의 대상여부에 대해 홍보를 확대하여 혹시나 면제대상인지 모르고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없어야겠다.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관련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경비지도사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내에서 경비업체 종사자의 일정 경력 이상의 자로 모집인원을 별도로 정원내에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부의 군대, 경찰의 경력자의 자격 취득을 인정하면서, 실제 경비업 종사자를 위해 관련 모집정원을 정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전국 100개 이상의 경찰관련 학과의 교과목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강과목의 동일명칭으로 강의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사 동일 과목을 인정하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대학의 확인 등을 통해 무분별한 과목 인정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면, 경비업의 근무경력의 기간을 줄이거나, 관련 이수과목을 3과목 이수에서 2과목 이하로 줄여 경비업에 종사하는 일정 경력과 학력을 가진 자들에게 1차 면제의 기회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에 관한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2004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관련 전공자가 기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지금처럼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나, 비관련학과 졸업자는 2년 이상 현장 실무 경력을 더 요구하는 등 자격증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천적으로 경비지도사의 자격요건을 특정 학력과 전공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일정 실무경력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자격제도로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 관련 학과의 질 높은 교육제공과 일정 점수 이상의 학점 취득 등 세부적 기준의 마련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제13조의 4호의 경비업 7년 이상 종사자에 대한 자격시험 1차 면제 규정은 관련 경비업체의 교육비용 등¹³⁾에 의해 예산과 교육지원 등으로 인한 업무 불가 등을 이유로 특히 영세한 경비업인의 경우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 우수한 직원에 대해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취득을 위하여 경비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세분화 추진

경비지도사 자격증도 단순히 일반, 기계경비지도사로 양분하여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일반 경비지도사를 시설경비지도사, 호송경비지도사, 신변보호지도사, 특수경비지도사로 각각 세분화하여 공인된 국가자격증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외국의 관련 자격제도처럼 일정 학력과 경력이 전제된 전문가가 절

13) 한국경비협회에 따르면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료는 21만원 가량으로 책정되어 있고, 1일 8시간(09시 ~ 17시50분), 일요일을 제외하고 8일가량의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근무경력과 일정 학력의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격증의 분류처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각 단계별로 민간경비자격증도 단계별로의 수준, 권한, 능력 등에서 차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1~3등급, 특급 등 등급별 자격을 부여하여 전문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분화의 전제 조건으로 각 자격증별로 적합자의 요건에 교육정도와, 경비업의 경력기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경비지도사 선임·배치의 개선

민간경비원의 지도와 감독이 현실적으로 경비지도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현업에 종사하는 수 많은 경비원들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의 대부분이 만 19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선임과 배치는 이 나이에 맞춰 이루어지면 안 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비지도사들은 주로 일정 직급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영세한 기업 일수록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경비지도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경력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가 경비지도사로 활약해야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부족한 경험과 어린 나이의 경비지도사가 이러한 업무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CCP제도를 참고하여 경비지도사 선임·배치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직무경력은 최소 3년 이상 경호경비분야의 관리자(책임자)로 근무경력을 포함하거나,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 선임·배치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다(박동균·김태민, 2010: 53).

4. 청원경찰관의 근무경력 인정

청원경찰관은 민간경비원의 경력에도 경찰관의 경력도 관련 법률은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경우 경찰관과 민간경비원의 모호한 신분적 구조로 인해 청원경찰관들에게 사기저하 등 더 큰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군대 등 다양한 병과 등의 인정과 비교해 본다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경비업에는 시설경비, 특수경비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수한 은행 등의 시설경비와 특수경비분야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원경찰관도 민간경비의 한 분야로 포섭될 수 있고, 이 특정한 분야에서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다면 더욱 민간경비 분야의 발전에 이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원경찰관의 근무경력도 1차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론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이 올해로 12회까지 진행되고 있고, 명실상부한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비지도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 각 분야별 경력자 중심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1차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에는 일정 전공자 및 경력을 전제로 응시를 가능하게 한 것처럼 경비지도사 시험 또한 민간경비종사자 중심의, 관련 학과 출신자 중 일정 경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바뀌어져 가야할 것이다. 일반 자격증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자격증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 자격시험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경비지도사 시험의 1차 면제대상자규정과 같이 비민간경비종사들로 시험 면제를 계속 확대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직업선택의 다양함과 타 분야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경비업 종사자 중심의 전문화된 자격증으로 기능을 해야만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민간경비 자격은 세분화되고 엄격하게 발급되도록 하였고, 관련업의 종사자 중심의 자격증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가는 것을 보더라도 현재의 우리나라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2개로 이원화 할 것이 아니라, 각 경비업무에 따른 경비원의 효율적 감독과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경비지도사, 호송경비지도사, 신변보호지도사, 특수경비지도사 등으로 세분되고 전문화해야 한다. 향후 민간경비 시험제도와 관련된 해당 기관, 경비협회, 관련 전공 학과 등에서 현 시험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비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경비업법. (개정 2009.4.1 법률 제9579호).
- 경찰청. 2008. 2008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공배완. 2006. 한국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2: 51-72.
- 김태민·강영길. 2009. 한국경비원 관리자 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6(1): 156-175.
- 박동균. 2002.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향. 한국민간경비학회지. 5: 131-156.
- 박동균. 2004. 위기관리 능력제고를 위한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3: 173-192.
- 박동균·김태민. 2010.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경비업법의 개정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공공안전행정연구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자료. 2010(2): 44-60.
- 박준석·홍준혁. 2006. 민간경호·경비 관련 전문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보. 7: 121-162.

- 박준석·문임표·오세광. 2008. 한국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실태와 발전방안. 대한범죄학회. 2(2): 39-62.
- 안황권. 2007. 경비지도사의 조직학습화가 위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 27: 118-141.
- 양춘호·노선표·임대용·조동진. 2002. 경비지도사제도 실태와 외국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1): 305-316.
- 이상철·안성조. 2008. 한국 시큐리티 자격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243-264.
- 이윤근. 2001.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3: 169-198.
- 임명순. 2008.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 99-121.
- 장명진 · 이광남. 2003. 21세기 능력중심사회에서 보안서비스산업의 경호직무 분야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 제도와 그 방안에 따른 국제경호협회 경호자격제 도의 분석 및 국가공인 도입의 필요성. 국제경호협회. 정기학술발표회 2: 4-31.
- 정지운. 2007. 민간자격증의 의의와 전망 - 2006년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 451-470.
- 조용철. 2007. 외국 민간경비원의 자격증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133-152.
- 주식회사 에스원. 2001. 에스원 이십년사. 서울: 주식회사에스원
- 최정택. 2009. 민간경비 자격검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18: 143-167.
- 허정봉. 2011. 음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경영외식학회. 호텔경영학연구. 20(1): 225-244.
- Siminses, Clifford E. 2006. *Private Security in America*. NJ: Prentice-Hall.
- Bilek, Arthur & Peter P. Lejins, 1997. *Private Security*. 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co.
- 경찰위원회. <http://www.police.go.kr/COMMISSION/frame.jsp>
- 국방부.<http://www.mnd.go.kr>
- 대학정보공시센터. <http://www.academyinfo.go.kr>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 에듀에버. <http://www.eduever.com>
- 한국개발연구원. <http://epic.kdi.re.kr>
- 한국경비지도사협회. <http://www.ksia.in>

白錫基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1991년 8월)학위를 취득하고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대구대학교, 육군3사관학교, 영남이공대학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계명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 경운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경북과학대학 경찰행정과 전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경찰행정, 범죄학,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PTED), 민간경비 등이며,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최근 발표 논문으로는 “선진 외국의 신입순경 교육훈련 제도의 시사점(2009, 공동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2호)”,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의 개선방안(2010, 공동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3호)”가 있다(back1586@hanmail.net).

李成辰: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2004년 2월)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KT텔레캅 동대구지사 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협회에서 소송실무과정을 이수하였고, 경북전문대학 경찰경호행정학과에서 강의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간경비, 경찰행정, 교정학 등이며, 한국민간경비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minevitamin@naver.com).

투 고 일: 2011년 05월 23일

수 정 일: 2011년 06월 13일

게재확정일: 2011년 06월 17일

A Study on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fication of Security Leader

Suk Ki Back, Sung Jin Lee

Korea's security instructor qualification is started in 1997 and have been performed 13 times so far now. If you examine the Security Industry Act Article 13 paragraph 3, you must find that this examination is easy to obtain a certificate for police or military's experience. Many police apply for the test to obtain certificate. because they think it is good for after their Retirement. Based on analysis of police statistics 2009, the total number of security companies is 3,270, the number of guards who are working is 146,000 people. But the annual exemption for a primary test is only 0.5%. And who have a primary exemption with the university courses and private security experience is only 33 people from 2007 to 2009. For developing security instructor qualification, people who have a private security experience obtain the opportunity to certify the qualification license easily. Police and security-related university graduates who have a long experience in security must have a opportunity to a primary test exemption. And many private security guards get a exemption for a primary test. that can lead the growth Korea's security business. Compared to the case of foreign Qualification of Security Leader, they demand for an experience and expertise of security.

Key words: security leader, security licence, guard business, private security industry